

의안번호	제 78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392회)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30일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4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발 의 자 : 오영탁,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심기보, 육미선,
김국기

1. 개정이유

-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인권교육 등 조항 신설
- 조문 이동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안 제18조)
-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안 제19조~제21조)
- 기타 용어 정비 : 증진하고→높이고, 함양하고→길러, 배양하고→기르고, 행하는→하는, 응한다→따른다, 보궐위원→새로 위촉된 위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입법예고 : 2021. 6. 16. ~ 2021. 6. 26.(10일간)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로, “증진하고”를 “높이고”로, “함양하여”를 “길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배양하고”를 “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행하는”을 각각 “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22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앞에 “제3장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제3장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삽입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책개발·연구·교육”을 “정책개발, 연구,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는 도지사, 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로,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제1항제1호 중 “배우자이었던”을 “배우자였던”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체육인 인권”으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체육인 인권 교육) 도지사는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종전의 제18조) 중 “기여”를 “이바지”로 한다.

제4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

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22조(중전의 제17조) 및 제24조(중전의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법인 및 단체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의 체육진흥 지원에 <u>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u>으로써 도민의 체 력을 <u>증진</u>하고 <u>건전한 정신을 함 양</u>하여 <u>건강한 삶을 영위</u>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 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 전한 신체와 정신을 <u>배양</u>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u>행 하는</u>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p> <p>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u>행하는</u> 자발적 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 한다.</p> <p>5. ~ 7. (생 략)</p> <p>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생 략)</p> <p>② <u>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u></p>	<p>제1조(목적) ----- ----- <u>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u> ----- <u>높이 고</u> ----- <u>길러</u> ----- -----.</p> <p>제2조(정의) ----- -----.</p> <p>1. ----- ----- ----- <u>기르고</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하는</u> -----.</p> <p>4. ----- ----- <u>하는</u> ----- -----.</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현행 과 같음) <u><삭 제></u></p>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신 설>

<신 설>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현행
과 같음)

<삭 제>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현
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체육진흥협의회

제7조 (생략)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생략)

5. (생략)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기능) -----
----- 따
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 정책개발, 연구, 교육 -----
-

5. (현행과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 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
--- 선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2. 3.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제13조 (생략)

제14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같음)

② 새로 위촉된 위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

-----.

1. -----
----- 배우자였던 -----

2.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5조(해촉) -----

위촉 해제-----.

1. (현행과 같음)

2. -----
----- 않다고 -----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제15조 · 제16조 (생략)

제4장 보칙

<신설>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 제17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

제4장 체육인 인권

제1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체육인 인권 정책의 기본방향
2. 대상별 핵심 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4.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체육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체육인 인권 교육) 도지사는 체육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 설>

제21조(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도지사는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폭력 등 체육계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1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경비지원을 받은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체육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법인 및 단체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3조(포상) -----
- 이바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관련 규정의 적용)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비 지
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
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24조(관련 규정의 적용) ① 제4
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다.

②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
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취

□ 국민체육진흥법(2020.12.08. 일부개정)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